



제 429국회 (정기회)
제 10차 정무위원회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불법대부업광고 차단 등 조치 요청 근거 마련〉
■ 양부남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3345호)

2025. 11.

정 무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정명호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양부남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5. 9. 29.
3. 회 부 일 : 2025. 9. 3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부업등록을 하지 않고 대부업을 하거나 이에 대하여 광고 행위를 하는 행위는 모두 금지하고 있음. 불법 사금융업자의 대부광고를 발견하는 경우 금융감독원은 방송통신위원회에 심의요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삭제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사금융업자들은 SNS, 온라인 커뮤니티, 메신저 앱 등을 통해 대포폰, 대포계좌 등을 활용한 불법 대부영업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음. 특히 방송통신위원회의 구성 상황이나 기타 사유로 심의가 열리지 않거나, 심의에 필요한 기간이 경과하는 동안 불법 사금융업자들은 게시물을 삭제한 뒤 곧바로 새로운 게시물을 올리는 방식으로 단속을 회피하고 있으며, 그 결과 불법사금융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금융위원회가 일정 기준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

공자에게 직접 차단·삭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불법사금융
광고 유통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차단하고자 함(안 제9조의10 신설).

Ⅲ. 검토의견

- 개정안은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이 아닌 자가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통하여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는 경우 금융위원회로 하여금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그 광고에 대한 차단·삭제 등 적절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10 신설).

현행	개정안
<u><신설></u>	제9조의10(불법사금융업자의 광고에 대한 조치의 요청) 금융위원회는 불법사금융업자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일일평균 이용자의 수,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이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라 한다)를 통하여 제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대부업에 대한 광고를 하는 경우 해당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그 광고에 대한 차단·삭제 등 적절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 현행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함) 제9조의2는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이 아닌 자의 대부업 광고와 대부중개업자 또는 대출모집인이 아닌 자의 대부중개업 광고를 금지하고¹⁾, 위반 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음²⁾.

○ 또한 시·도지사, 금융감독원장 등은 법 제9조의2를 위반한 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발견 또는 확인한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해당 불법대부행위등에 이용된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음³⁾.

○ 한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함) 제44조의7은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敎唆)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를 포함한 불법정보의 유통을 금지하고 있는데,

해당 정보에 대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⁴⁾의 처리 거부·정지

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2(대부업등에 관한 광고 금지) ①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이 아니면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대부중개업자 또는 대출모집인이 아니면 대부중개업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 또는 제3조의2를 위반하여 등록 또는 등록갱신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등을 한 자

2.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 또는 제3조의2에 따른 등록 또는 등록갱신을 한 자

3. 제9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 광고를 한 자

3)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6(불법 대부행위 등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등) ① 시·도지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9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광고나 이 법 또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이하 이 조에서 “불법대부행위등”이라 한다)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발견 또는 확인한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해당 불법대부행위등에 이용된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4) 불법대부업광고의 경우 금융위원장

요청 △요청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함)의 심의 및 시정 요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의 시정요구 미이행 시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하여금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해당 정보의 처리를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함⁵⁾.

○ 나아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에 따른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⁶⁾, 금융위원회 외에 금융감독원 역시 불법대부업광고 관련 정보를 심의위원회에 제보하여 심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그런데 불법대부업광고 등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또는 심의위원회의 구성·심의가 지연되는 동안 업체에서 해당 불법 게시물을 삭제하고 새로 게시하는 등의 편법으로 당국의 단속을 회피하고 있어 불법사금융피해가 심

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9. 그 밖에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敎唆)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정보가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에게 해당 정보의 처리를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제1항제9호의 정보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및 제14조의2에 따른 촬영물·편집물·합성물·가공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의 장의 요청을 포함한다]이 있었을 것

2. 제1호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제4호에 따른 시정 요구를 하였을 것

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나 게시판 관리·운영자가 시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것

6)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심의위원회의 직무) 심의위원회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에 따른 사항의 심의

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존재함.

- 이에 개정안은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이 아닌 자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통하여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또는 심의위원회를 경유하지 않고 직접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정보의 차단·삭제 등 적절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불법대부업광고를 보다 신속하게 차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긍정적인 입법취지로 보임.

□ 다만,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다음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음.

□ 먼저, 개정안은 불법광고 차단 등 조치 대상을 「대부업법」 제9조의2제1항 위반한 광고로 정하고 있는데 이는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이 아닌 자가 대부업 광고를 하는 경우로 한정됨.

-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불법대부업 관련 광고는 미등록대부업자의 대부업 광고행위뿐만 아니라 허위·과장 광고, 금융기관 사칭 광고, 개인정보 편취 등 불법대부업 광고 등 그 양상이 다양하므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차단 등 조치 요구대상을 미등록 대부업 광고보다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다음으로, 현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감독·조치 등 권한은 「정보통신망법」 등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통신당국에 부여되어 있는바, 금융위원회에게 통신당국을 경유하지 않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조치 권한을 직접 부여하는 것은 현행 규율체계상 적정하지 못한 측면이 있음.

○ 참고로, 현재 「대부업법」상 불법 대부행위 등에 사용된 전화번호 이용중지 관련 제도 역시 금융감독원장 등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전화번호 이용중지 요청을 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직접 중지조치를 할 수 있도록 경유 절차를 마련하고 있는바⁷⁾, 이러한 규율체계를 참고하여 개정내용을 수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문 의 처

02)6788-5108

7)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3(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제한)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청이 있는 경우 1년 이상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해당 전기통신번호(연결되어 있는 착신회선의 전기통신번호를 포함한다)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6에 따른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 요청
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3에 따른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 요청
3.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의2에 따른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 요청
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에 따른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 요청
5. 제32조의4제1항의 위반에 따른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 요청(수사기관의 장이 제32조의4제1항의 위반사실을 확인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해당 전기통신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역무의 중지를 요청한 경우로 한정한다)